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30,714,000	12,921,420
일반회계	419,636,846	12,589,105
특별회계	11,077,154	332,315
기타특별회계	11,077,154	332,315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1,079,817	32,395
공공실버주택특별회계	1,236,694	37,101
건축진흥특별회계	400,000	12,000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	477,700	14,331
주차장운영특별회계	719,000	21,570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119,168	3,575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6,890	2,007
드림빌특별회계	1,954,911	58,647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435,979	43,07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3,586,995	107,61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5,022,748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